

제831호

무주 공보

2026. 9. 23.(수)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 무 주 군

편 집 : 기획조정실 (☎ 063-320-2226)

조 례

- 「무주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4
- 「무주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50
-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6
-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2
-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4
- 「무주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82

◆ 무주군공고 제 2026-1036호

「무주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산지전용 허가기준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산지의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에 관한 합리적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투자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전자우편 : jinsu2914@korea.kr
- 팩스 : 063-320-22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산림녹지과(전화 : 063-320-2462, 팩스 : 063-320-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건 서

- 조례명 : 「무주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6)에 따른 허가기준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 본문의 “50퍼센트”는 “60퍼센트”로 한다.
2. 영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 중 “25도”는 각각 “30도”로 한다.
3. 영 별표 4 제2호다목3) 중 “150퍼센트”는 “18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13호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가.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정비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반영
- 다. 물가상승 및 타 수련시설의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식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숙박실 사용료 산정 시 이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련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주요 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안 제10조제7항, 제11조제2항)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기간 및 기준 정비(안 제124조제2항, 제3항)
- 다.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식사비 조정, 숙박실 구분 명칭 변경(안 별표3)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여성청소년팀
- 전자우편 : amase323@korea.kr
- 팩스 : 063-320-2073

5.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 여성청소년팀(전화: 063-320-2073, 팩스: 063-320-2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지정기간 및 전문인력 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무주군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1. 반딧불청소년수련원

구 분	기 준 (입실한도)	사용료 (원)	비 고
숙박실 (학교단체, 1명, 1박)	초등학생 이하(8명)	7,800	○ 숙박시간 • 1박 기준: 당일 14:00 ~ 익일 11:00 ○ 미취학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요금, 학생 아닌 청소년은 해당 연령별 학생으로 적용 ○ 강당 사용시간 구분 • 오전: 09:00 ~ 12:00 • 오후: 14:00 ~ 18:00 • 야간: 18:00 ~ 22: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 추가 부담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 추가 부담 •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 추가 부담
	중학생(8명)	8,400	
	고등학생(6명)	9,600	
	대학생(6명)	10,800	
	인솔자(6명)	12,000	
숙박실 (일반단체, 1실, 1박)	4명 이내	60,000	○ 당초 허가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미만 : 기준금액의 50% 추가 부담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기준금액의 100% 추가 부담 • 1시간 이상 초과: 매시간 기준금액의 100% 추가 부담
식사비	초등학생 이하	5,000	
	중·고등학생	6,000	
	대학생	7,000	
	일반인	7,000	
강의실	오전/오후	70,000	
	야간	80,000	
	1일	210,000	
대강당	오전/오후	170,000	
	야간	200,000	
	1일	510,000	
수련활동 지도료	1일 1명	5,000	○ 프로그램 위탁 시

2. 반딧불청소년야영장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원)		비고
				비수기	성수기	
야영장	청소년단체	1명 / 1박	4세 이상~초등학생	3,300		
			중 학 생	4,400		
			고등학생	5,500		
			대 학 생	7,700		
			성 인	8,800		
	일반인	1개소(데크) / 1박 4인기준	3*3 ~ 3*6 (제곱미터)	25,000	30,000	
			4*6 ~ 5*6 (제곱미터)	30,000	35,000	
운동장	1회	2시간		25,000		
다목적강당	1회	오 전		77,000		
		오 후		77,000		
		야 간		110,000		
		1 일		250,000		

- ① 숙박시간은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하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②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각 해당 연령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적용한다.
- ③ 성수기: 7월, 8월,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 ④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⑤ 기준에 미달한 시간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⑥ 오전은 09:00 ~ 13:00, 오후는 14:00 ~ 18:00,
야간은 18:00 ~ 22:00, 1일은 09:00 ~ 22:00를 기준으로 한다.
- ⑦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0,000원으로 냉·난방기 사용 시 20,000원 추가 부담
- ⑧ 일반 야영객의 경우 기준 인원 초과 1명당 5,000원 추가 부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⑥ (생략)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여성가족부</u>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성평등가족부</u> ----- -----.
제11조(조직 및 운영) ① (생략) ②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u>여성가족부</u>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③ ~ ⑤ (생략)	제11조(조직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성평등가족부</u> ----- -----.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① (생략) ② <u>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다.</u> ③ <u>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u>	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 지정기간 및 전문인력 기준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u> <u><삭 제></u>

무주군 공고 제2026-1009호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주군에서 건립중인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위원회 심의사항 및 소위원회 설치 등 운영 기준 정비(안 제4조 및 제4조의2)
- 나. 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 정비(안 제12조부터 제15조)
 - 임시거주시설의 명칭 변경 및 추가: 별표로 명시
 - 임시거주시설의 기능, 사용자격 및 사용기간 구체화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23. ~ 10. 13.(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
- 전자우편 : uj0959@korea.kr
- 팩스 : 063-320-2075

5.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전화: 063-320-2067, 팩스: 063-320-2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화번호 :

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보증금 예치	2. 구 분					
		신설		강화	○	누락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인구활력과 인구활력과장 김성옥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 주무관 이유진						
4. 근거법령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피규제자: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사람 규모: 시설 입주 세대 중 분할납부 대상자 수에 따라 매년 변동 이해관계자: 예비 귀농인·귀촌인, 시설 운영·관리부서 및 수탁운영기관						
6.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납부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시설 운영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곤란함. 다만, 분할납부 및 보증금 반환 실적을 고려하여 금액과 운영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함.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별표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자에게 시설 유형별로 40만원 또는 6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함 ○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는 종전 조례에 설치·운영 및 보증금 규정이 없음 《개정규제》 ○ 제15조: 새로 설치하는 <u>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53㎡형 사용자에게 사용 전까지 7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함</u> ○ 보증금은 분할납부되는 사용료의 납부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정함 ○ 분할납부 사용료의 납부가 완료되면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함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전북형 귀농·귀촌 보증자리는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에게 최대 2년간 거주공간, 텃밭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기 체류형 시설이다.
-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면 이용자의 일시적인 부담은 줄어들지만, 사용기간 중 미납이 발생할 경우 남은 사용료의 징수와 채권 확보에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
- 현행 조례는 성격이 유사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이미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새로 설치하는 전북형 귀농·귀촌 보증자리에는 적용할 근거가 없다.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사용료 분할납부를 허용하면서도 남은 사용료의 납부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보증금은 분할납부되는 사용료의 납부를 담보하는 반환조건부 예치금으로서 사용료와 별도로 군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으며, 분할납부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한다.
- 보증금 70만원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로 정하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 수준과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귀농·귀촌 초기 단계의 입주자에게 70만원을 사용 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
- 보증금의 반환시기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자금부담이 장기화되거나 반환을 둘러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사용료 분할납부 결정과 동시에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면 사용료 징수절차와 연계하여 집행할 수 있고, 기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 관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 분할납부 일정과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

- 환하도록 운영하면 집행기준을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분할납부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되고 보증금 상한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제한되므로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다.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현행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 규정은 해당 시설에만 적용되므로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사용료를 전액 한꺼번에 납부하게 하면 별도의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귀농·귀촌 초기 입주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보증금 예치 대신 무주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활용할 수 있으나, 가입절차와 보험료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납부고지와 독촉만으로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분할납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미납 위험을 사전에 담보하는 수단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과 목적은 유사하지만 시설과 사용자가 서로 달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의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적용된다.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시설 입주 세대 수가 확정되지 않아 1세대 기준 비용과 산식으로 분석함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직접 자금부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입주 1세대당 70만원을 예치한다. 총 예치규모는 70만원 × 분할납부 대상 입주 세대 수로 산정된다.
- 보증금은 분할납부 완료 후 전액 반환되므로 납부액 전부가 최종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규제자의 실질적인 금융비용은 70만원에 예치기간과 해당 기간의 자금조달금리 또는 예금금리를 적용한 기회비용이다.
- 행정비용: 보증금 수납·보관, 분할납부 이행 확인 및 반환업무가 발생한다. 다만 기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

관리절차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은 제한적이다.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이용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서도 남은 사용료의 납부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 분할납부 기간 중 미납이 발생할 경우 채권 확보와 별도의
회수절차에 드는 행정비용 및 회수 지연을 완화할 수 있다.
- 기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보증금 관리 경험을 활용함으
로써 시설 간 형평성과 사용료 징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입주자는 70만원을 일정 기간 예치해야 하지만, 분할납부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되므로 영구적인 금전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 보증금 상한과 반환시기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납부 완료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면, 이용자의 일시적 부담보다 분할
납부 허용과 납부이행 확보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 규제는 군이 설치한
임시거주시설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리조건으로,
시장진입·가격·거래상대방 선택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피규제자는 개인 입주자이고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기업활동 저해요소가 없다.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적용시설은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적용대상은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 납부시기는 사용 전, 금액은 7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 보증금의 목적을 분할납부 사용료의 납부이행 확보로 한정
하고, 사용료 납부가 완료되면 전액 반환하도록 하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 현행 무주군 조례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50㎡형 60만원,
33㎡형 40만원의 보증금을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집행경험
이 있다.

- 보증금 70만원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 따른 상한을 준수한다.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귀농·귀촌 업무 담당부서와 시설 운영인력이 기존 보증금 관리절차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보증금은 반환을 전제로 관리되므로 군의 재정수입이나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으며, 수납·보관 및 반환을 위한 회계 처리 업무가 일부 증가한다.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사용자가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구비서류는 없고, 사용료 분할납부가 결정되면 고지된 보증금을 예치하면 된다.
- 분할납부 사용료의 납부가 완료되면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예치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절차로 운영한다.
- 보증금의 반환시기와 반환방법을 사용허가 조건과 안내문에 명확히 표시하면 처리절차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볼 수 있다.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무주군에 이주한”을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로, “유도하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되어있던”을 각각 “되어 있던”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되어있는 사람이”를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 및 제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귀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귀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
2.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귀농인·귀촌인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4.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 심의·평가 방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위원은”으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람”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설치 및 구성)”을 “(구성 및 임기 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 및 정족수)”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을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으로,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를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로 한다.

제8조 중 “귀농인·귀촌인”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단체가 귀농인·귀촌인”으로, “법인·단체에 대하여”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제7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을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사업

2.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화합 사업

3.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의 제목 “(지원금의 환수 등)”을 “(지원금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귀농인·귀촌인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을 “(임시거주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집 :”을 “집:”으로, “거주를 위해서 임대하여 주는”을 “일정 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제1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용 교육생”을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게스트하우스 :”를 “첫걸음센터:”로, “탐방 등”을 “탐방, 상담, 교육 및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영농교육 및 실습

4.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

의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준비와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거주 공간, 텃밭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제13조의 제목 “(입소 자격 및 사용기간)”을 “(사용자격 및 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소 자격”을 “사용자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를 “귀농·귀촌 첫걸음센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귀농인의 집 및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예비 귀농인·귀촌인 또는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귀촌인
3.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40세 미만의 예비 귀농인·귀촌인. 다만,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주 의사, 영농계획, 지역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집 : 1회 6개월 사용을 원칙으로”를 “집: 사용기간은 6개월”로, “6개월까지”를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3. 귀농·귀촌 첫걸음센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사용횟수는 동반 이용객을 포함하여 연 1회, 총 3회까지로 한다.
4.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사용신청 및 사용자 선정)”을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임시거주시설 사용자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귀농·귀촌 첫걸음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귀농·귀촌 첫걸음센터의 사용료는 사용일 전 2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금은 사용료가 전액 납부된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미납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시거주시설의 보수 등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을 시작한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반환금액은 월 단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월 할로 계산하되, 사용이 중단되거나 퇴거한 날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일 단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위탁운영) 군수는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귀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실태조사 및 홍보”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홍보) 군수는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귀농·귀촌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귀농·귀촌정책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지원의 신청·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제14조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무주군 임시거주시설 명칭 및 위치(제11조제2항 관련)

시설명칭	위치
귀농인의 집	무주군 무풍면 대덕산로 121
	무주군 안성면 장무로 1559-3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1-3 일원
귀농·귀촌 첫걸음센터	무주군 안성면 봉명로 41-2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2995-1 일원

[별표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보증금
(제15조제3항 관련)

시설명	구분	보증금(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50㎡형 (49.95㎡ ~ 53.26㎡)	600,000
	33㎡형 (33.27㎡ ~ 33.99㎡)	400,000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53㎡형	700,000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단기(2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무주군에 이주한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u> ----- ----- <u>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u> ----- ----- <u>이바지함</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	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귀농인”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u>되어있던</u>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 ----- ----- ----- ----- <u>되어 있던</u> ----- ----- -----.
6. “귀촌인”이란 군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u>되어있던</u> 사람 중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군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	6. ----- ----- ----- <u>되어 있던</u> ----- ----- -----.

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 라. (생 략)

7. “예비 귀농인·귀촌인”이란 농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군
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
람을 말한다.

8. “법인·단체”란 법 제10조제2
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단체
를 말한다.

9.·10. (생 략)

<신 설>

-----.

가. ~ 라. (현행과 같음)

7. -----

-----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

<삭 제>

9.·10.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귀
농인·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
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귀촌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귀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에 관
한 정책 방향

2.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신설
·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귀농인·귀촌인의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이주 촉진과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귀농·귀촌정책위원

4. 관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 사업 대상자의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인원, 심의·평가 방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8. (생략)

④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신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귀농·귀촌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귀농·귀촌 지원 사업의 변경 및 취소

3. 귀농인·귀촌인의 고충 처리 협의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
--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8. (현행과 같음)

④ -----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4.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
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정족수) ①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
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생략)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
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유입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신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
집한다.

② -----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
----- 의결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삭제>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8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법인·단체가 귀농인·귀촌
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 지원
할 -----
-----.

제9조(귀농·귀촌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
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① 군수는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귀농·귀촌 신고서와 제1항 각 호의 사업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세

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사업

2.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교류·화합 사업

3. 귀농·귀촌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4.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 귀농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

<삭 제>

<삭 제>

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귀농인·귀촌인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거주시설 설치·운영) ① ~ ③ (생략)

제12조(임시거주시설의 기능) 임시거주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귀농인·귀촌인과 예비 귀농인·귀촌인에게 거주를 위해서 임대하여 주는 시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귀농인·귀촌인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임시거주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시거주시설의 기능) -----
----.

1. ----- 집: -----

일정 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
--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다음 각 목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가. 예비 귀농인·귀촌인 대상
영농교육 및 영농실습

나. (생략)

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이용
교육생에 대한 거주 공간 제
공

3.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 예
비 귀농인·귀촌인에 대하여 군
정착지 탐방 등 정보 습득을 위
한 임시 숙소

<신설>

제13조(입소 자격 및 사용기간) ①
임시거주시설 입소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귀촌인으로 하
되, 군으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
·귀촌 게스트하우스 : 예비 귀
농인·귀촌인

가. 영농교육 및 실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용자-----

-

3. ----- 첫걸음센터: -----

----- 탐방, 상담, 교육 및 지
역 -----

4.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귀농인·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
·귀촌인의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준비와 지역 적
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기
간 거주 공간, 텃밭 및 공동이용
시설 등을 제공하는 시설

제13조(사용자격 및 사용기간) ① -
----- 사용자격-----
-----.

1. 귀농인의 집 및 체재형 가족실
습농장: 예비 귀농인·귀촌인
또는 군으로 전입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귀촌인

2. 귀농·귀촌 첫걸음센터: -----

<신 설>

② 임시거주시설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의 집 : 1회 6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 1회에 한하며, 최대 9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3.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 1회 사용 시 3일 이내로 한다.

<신 설>

제14조(사용신청 및 사용자 선정)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3.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40세 미만의 예비 귀농인·귀촌인. 다만,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거주 의사, 영농계획, 지역 정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

1. ----- 집: 사용기간은 6개월-
----- 6
개월 -----.

2.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용기간은 9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에는 입주 및 퇴거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3. 귀농·귀촌 첫걸음센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사용횟수는 동반이용객을 포함하여 연 1회, 총 3회까지로 한다.

4.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임시거주시설 사용자

접수하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귀농인의 집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귀농인의 집 사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귀농·귀촌 첫걸음센터의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과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에게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귀농·귀촌 첫걸음센터의 사용료는 사용일 전 2일까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교육비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사용료는 남은 사용기간을 월할(月割)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용중단 시점이 월중인 경우 해당 월의 사용료는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금은 사용료가 전액 납부된 후 지체 없이 반환한다. 다만, 미납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임시거주시설의 보수 등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
3. 사용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사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위탁운영) 군수는 임시거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을 시작한 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⑦ 제5항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반환금액은 월 단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월할로 계산하되, 사용이 중단되거나 퇴거한 날이 월중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일 단위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16조(위탁운영) 군수는 임시거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제5장 귀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신 설>

있다.

제5장 실태조사 및 홍보

제18조(홍보) 군수는 귀농·귀촌 활
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
기 위하여 행사·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24호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증진 전반으로 확대하고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과 업무,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마음건강팀 우) 55515
- 전자우편: jjlove7942@korea.kr
- 전화: 063-320-8620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추진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둔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등을 파손·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2. 폭언·폭행, 소란 등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사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무주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주군수

「무주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주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4조

나. 세부시행계획,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6조

다.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급중지 및 환수,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 전자우편 : thdcjfg80@korea.kr
- 팩스 : 063-320-23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 063-320-2342, 팩스 063-320-2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 조례명: 「무주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명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우개선사업)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무주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인 사람

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120시간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60시간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은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둘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및 시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세부적인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급 신청)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장기요양기관

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처우개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과 동일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29호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에 따라 무주군 헌혈 장려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발적인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헌혈자에 대한 무주사랑상품권 등 기념품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헌혈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우) 55515
- 전자우편: bobae19@korea.kr
- 전화: 063-320-8103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무주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의 권장과 홍보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헌혈 참여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4. 헌혈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운용
5.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 헌혈장려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헌혈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사랑 상품권은 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으로 하며,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또는 헌혈장려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일정, 장소 및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무주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30호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군민의 건강 보호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선택예방접종의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감염병 예방 및 군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 규정 (안 제2조)
- 나. 접종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접종 대상자 기준 구체화 (안 제3조 ~ 제4조)
- 다. 접종 방법 및 절차 규정, 부담 이득 환수 및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우) 55515
- 전자우편: bobae19@korea.kr
- 전화: 063-320-8103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 횟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인플루엔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접종기간 중 1회

제3조(접종비용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자에게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접종대상) 접종대상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나.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제5조(접종방법) ① 선택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은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접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의 예진 결과 접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지원한 예방접종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상 또는 피해구제에 관하여는 해당 예방접종의 종류 및 실시 근거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또는 「약사법」 제86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31호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나. 수거함의 설치·운영, 수거 및 처리, 교육 및 홍보(안 제6조~안 제8조)
- 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우) 55515
- 전자우편: gusgml1077@korea.kr
- 전화: 063-320-8221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무주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폐의약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용·남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무주군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폐기하려는 의약품으로서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가정에서 보유하거나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적용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는 폐의약품은 제외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

용과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폐의약품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수거시설의 설치와 수거·처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의약품을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수거함에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약품의 적절한 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약국 등 민간시설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시설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거함의 설치 장소와 폐의약품의 배출방법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무주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수거 및 처리) ① 군수는 수거함에 배출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되, 수거량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거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거한 폐의약품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반·보관하고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폐의약품의 수거량 및 처리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의 적절한 배출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약사회, 의료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또는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무주군 공고 제2026-1038호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 주 군 수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고자 함.
- 나. 조례 제명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지정, 흡연실의 설치, 금연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 관련 사업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민의 권리·의무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 나.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및 표시, 흡연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 다. 금연교육, 주민참여 지원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0조)
- 라. 포상, 금연지도원 위촉·운영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3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우) 55515
- 전자우편: healthcenter85@korea.kr
- 전화: 063-320-8209
- 팩스: 063-320-8239

4. 붙임

가. 의견서(서식)

나.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서

- 조례명 :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무주군수 귀하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와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의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를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버스정류소”를 “정류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를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흡연구역의 설치)”를 “(흡연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정되는 해당”을 “지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른다.

제9조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효율적”을 “효율적인”으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을 “법 제9조의5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을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징수·이의신청”을 “부과·징수·이의제기”로, “모든 절차”를 “절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무주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제2조(정의) ----- ----- 뜻은 -----.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 및 금연구역 표지 설치와 시설기준 이행 상태 등의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범위는 승강장 표지판 또는 관련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4. (생략)

②·③ (생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략)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등 필요

3. -----

----- 정류소-----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표2에 따른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① -----
--- 지정된 -----

-----.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주민참여 지원)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모전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상자에게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 등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항의 별표2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주민참여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범위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 효율적
인 ----- 법 제9조의5에 따라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태료) ① ----- 제5조에 따
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
-----.

② ----- 부과·징
수·이의제기 ----- 절차-----

-.

무주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무주군수



1. 제안이유

무주군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기본사회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국민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2) 전자우편 : seven7crow@korea.kr

3) 팩스 : 063-320-2229

4) 그 밖의 문의 : 무주군청 기획조정실(063-320-2714)

붙임 무주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끝.

무주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본사회”란 무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돌봄·의료·교육·교통·에너지·주거·소득 등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목표 및 추진 전략
 2. 기본사회 정책의 범위 및 실행 과제
 3.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기본사회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기본사회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기본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돌봄·의료·교육·교통·에너지·주거·소득 등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 관련 사업
 4. 생애주기별 기본서비스의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필

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및 정책 간 연계·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본사회 업무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3. 기본사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회단체, 노인, 청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사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